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2004. 2. 3.(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12월 5일
- 회부일자 : 2003년 12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221회 정례회 및 제222회 임시회

- 2003. 12. 17 :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보류
- 2004. 2. 2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질의답변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가. 제안이유

- 지방분권·행정혁신·균형발전·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도정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 및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구현 등을 위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 도에 '혁신발전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및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방분권·행정혁신·균형발전·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과 도정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및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구현과 위원회 구성 원칙을 정함(제1조 및 제2조)
- 혁신발전협의회 설치·기능·구성·회의 운영방법을 정함(제3조 내지 제6조)
-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및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회의 운영방법을 정함
(제7조 내지 제18조)
- 위원회별 위원수는 지역혁신협의회 60인 이내, 지방분권·행정 혁신위원회 및 삶의질향상위원회는 각 30인 이내로 정함(제9조, 제13조 및 제17조)
- 위원회의 업무협조 및 지원을 위한 도정혁신발전추진단 운영,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
- 협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상 만)

-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신행정수도의 건설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정의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혁신발전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 및 행정혁신위원회,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지역협신협의회 설치의 근거법이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인 상태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와,

지역혁신협의회를 제외한 혁신발전협의회와, 지방분권·행정 혁신위원회, 삶의질향상위원회의 법적인 근거와 필요성, 현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가 61개가 있고,

이중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나 3회 이내 개최한 위원회가 78%에 달하고 있어 운영실적이 미약한 현실에서, 도정 종합적 심의기능을 수행할 본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 운영코자 한다면,

본 조례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에서 기존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은 재정비하는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되는 조례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새로 창립되는 4개 위원회 13개 분과위원회의 구체적 기능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제정안 제19조 제1항에서 충청북도정혁신발전추진단을 둔다고 하였으나, 추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과 기능,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제19조 제3항의 충청북도정혁신발전추진단에서 소관분야별 도정혁신 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라 신설하려는 도정혁신기획단(단장 4급)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밖에 제정안 제6조 제1항에서 “회의는 협의회장이 소집한다”고 하였는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협의회장은 안 제5조에 의한 공동회장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와, 제3항에서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고 하였는데 협의회가 아닌 위원회에 간사를 두는 사유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제정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공포(2004. 1. 16, 법률 제7061호)됨에 따라 조례명을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와 ‘협의회’의 명칭 혼용을 ‘협의회’로 통일하였으며
- 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장 제목을 “혁신발전협의회”에서 “충청북도발전협의회”로 함

-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회”로 그 명칭을 통일하고(제3조, 제7조, 제11조, 제15조)
- “회장·의장·위원장”의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으로 그 명칭을 통일함(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 “분과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 “도정혁신발전추진단 운영”에 관한 규정은 추진단이 별도의 조직이 아니므로 삭제하여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조례의 제명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안 제1조중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과 연계 하여 도정의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주요 국정과제와 도정혁신과제의 추진을 통한 충북지역발전 및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등의 실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종류) 충북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 충청북도발전협의회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및 삶의질향상협의회를 둔다.

안 제2장의 제목 “혁신발전협의회”를 “충청북도발전협의회”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치) 국정과제와 주요 도정과제의 추진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안 제4조제1호중 “전략적 대응”을 “능동적 추진”으로 한다.
- 안 제5조제1항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회장”을 “도지사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민간대표회장”을 “민간대표의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4호중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삶의질향상위원회위원장”을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의장, 삶의질향상협의회의장”으로 한다.
- 안 제6조제1항중 “협의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 안 제7조중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에 관하여”를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로 한다.
- 안 제8조제6호중 “SOC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밖에 지역혁신협의회의 의장이 부의 하는 사항 등
- 안 제9조제3항중 “지역산업분과협의회, 과학기술분과협의회, 지방대육성및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및 SOC구축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의장”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으로 한다.
- 안 제4장의 제목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를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로 한다.
- 안 제11조중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협의회는 의장”으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행정개혁분과위원회, 인사시스템개혁분과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회, 재정·세제개혁분과위원회 및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를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분과협의회”로 한다.

안 제5장의 제목 “삶의질향상위원회”를 “삶의질향상협의회”로 한다.

안 제15조중 “향상을 위한”을 “향상에 관하여”로, “충청북도삶의질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안 제16조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협의회는 의장”으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및 여성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을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으로, “분과위원회”를 “분과협의회”로 한다.

안 제6장의 제목 “추진단 운영 등”을 “수당 등”으로 한다.

안 제19조를 삭제한다.

안 제20조의 제목중 “(수당)”을 “(수당 등)”으로, 동조 본문중 “협의회 및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제19조로 한다.

안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u>충청북도 혁신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행정혁신·균형발전·시행점수도 건설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과 연계하여 도정의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원칙) 혁신발전협의회는 대표성을 고려하여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및 삶의질향상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혁신발전협의회</p> <p>제3조(설치) 국정과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지역혁신 및 도정 주요 정책의 추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혁신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정과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지역적 창조에 관한 사항 2~3. (생략) 	<p><u>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제2조(협의회의 종류) 충북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 충청북도 발전협의회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및 삶의질향상협의회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충청북도 발전협의회</p> <p>제3조(설치) 국정과제와 주요 도정과제의 추진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기능) 1. 능동적 추진과 지역적 창조에 관한 사항 2~3. (생략)</p>

제정안	수정안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회장으로 하고 도내의 기관 및 단체의 장 등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u>민간대표회장은</u> 도정혁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3. (생략) 4. 지역혁신협의회의장, 지방분권·행정 혁신위원회위원장, 삶의질향상위원회 위원장 5. (생략)	제5조(구성 등) ① <u>도지사와</u> <u>민간대표 1인</u> 을 공동회장..... ② <u>민간대표회장</u> ③ 1~3. (생략) 4., <u>지방분권·행정 혁신협의회</u> <u>위원장</u> 5. (생략)
제6조(회의) ① 회의는 협의회장이 소집하고,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수시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생략)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관이 된다.	제6조(회의) ① <u>의장</u> ② (생략) ③ <u>협의회</u>
제3장 지역혁신협의회	제3장 지역혁신협의회
제7조(설치)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설치)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 (생 략) 6. 산업단지와 연계한 교통물류 등 <u>SOC</u> 구축에 관한 사항 등 7. <신설>	제8조(기능)..... 1~5 (생 략) 6. <u>사회</u> <u>간접자본에 관한 사항</u> 7. 그밖에 지역혁신협의회의 의장이 부의 하는 사항 등
제9조(구성 등) ①~② (생 략) ③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산업분과협의회, 과학기술분과협의회, 지방대육성및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및 <u>SOC구축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u> 분과협의회의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 하고,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 의회장.....
④ (생 략)	④ (생 략)
제10조(회의) ①~③ (생 략) 제4장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	제10조(회의) ①~③ (생 략) 제4장 <u>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u>
제11조(설치) 도민에 대한 통사행정을 구 현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지 방분권 추진 및 도정의 혁신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용하기 위하여 <u>충청북도</u> <u>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u> <u>라 한다)를 둔다.</u>	제11조(설치)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6. (생 략)	제12조(기능) <u>협의회</u> 1~6. (생 략)
제1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구성 등) ①협의회는 의장.....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생 략)	② (생 략)

제 정 안	수 정 안
<p>③ <u>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u> <u>행정개혁위원회, 인사시스템개혁분과위원회,</u> <u>지방분권분과위원회, 재정·세제개혁분과위원회 및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u> <u>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u> <u>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의</u> <u>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u> <u>규칙으로 정한다.</u></p>	<p>③ 협의회 <u>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분과협의회.....</u> </p>
<p>제14조(임기 및 회의) (생략) 제5장 삶의질향상위원회</p>	<p>제14조(임기 및 회의) (생략) 제5장 삶의질향상협의회</p>
<p>제15조(설치) 복지 향상, 환경보존, 문화·관광자원 개발,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자문에 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삶의질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5조(설치) 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6조(기능) 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6. (생략)</p>	<p>제16조(기능) 협의회 1~6. (생략)</p>
<p>제17조(구성 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제17조(구성 등) ① <u>협의회는 의장 1인을</u> <u>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u> <u>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② (생략)</p> <p>③ <u>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u> <u>복지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및 여성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② (생략)</p> <p>③ <u>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u> <u>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부과협의회장.....</u> </p>
<p>제18조(임기 및 회의) (생략)</p>	<p>제18조(임기 및 회의) (생략)</p>

제 정 안	수 정 안
<u>제6장 충진단 운영 등</u>	<u>제6장 수당 등</u>
<u>제19조(충진단 운영)①~③(생 락)</u>	<u>제19조(수당 등) 협의회</u>
<u>제20조(수당) 협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제19조(수당 등) 협의회</u>
<u>제21조(시행규칙) (생 락)</u> 부 칙 (생 락)	<u>제20조(시행규칙) (생 락)</u> 부 칙 (생 락)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행정혁신,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주요 국정과제와 도정혁신과제의 추진을 통한 충북지역발전 및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등의 실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종류) 충북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 충청북도발전협의회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및 삶의질향상협의회를 둔다.

제2장 충청북도발전협의회

제3조(설치) 국정과제와 주요 도정과제의 추진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정과제에 대한 능동적 추진과 지역적 창조에 관한 사항
2. 도정혁신의 기본방향 설정 및 주요정책과제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현안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도지사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도내의 기관 및 단체의 장 등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민간대표의장은 도정혁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내 기관 및 단체의 장
2. 경제계·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계 대표
3. 도정현안사업유치위원장
4. 지역혁신협의회의장,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의장, 삶의질향상 협의회의장
5. 도정혁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관이 된다.

제3장 지역혁신협의회

제7조(설치)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 진흥 및 산업집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혁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거점 도시의 전략적 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와 연계한 교통물류 등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혁신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9조(구성 등) ①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당연직위원은 경제통상국장·농정국장·건설교통국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역혁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종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4항에 의한다.

제10조(회의) ①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정례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4장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제11조(설치)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지방분권 추진 및 도정의 혁신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기관(중앙·도·시·군)간 기능 재정립 및 권한이양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기반 확충과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민주적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행정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5.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행정운영시스템의 혁신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의 구현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분권 및 행정혁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임기 및 회의) 위원의 임기 및 회의는 제5조제4항 및 제10조에 의한다.

제5장 삶의질향상협의회

제15조(설치) 복지·환경·문화·관광자원 개발,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민복지 및 행복지수 향상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존 및 지속 발전 가능한 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 평등에 관한 사항 등

제17조(구성 등) ①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당연직위원은 복지환경국장·문화관광국장·여성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복지환경, 문화관광, 여성정책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임기 및 회의) 위원의 임기 및 회의는 제5조제4항 및 제10조에 의한다.

제6장 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⑦ (생략)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